#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707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김상훈·강대식·김소희

김선교 • 서명옥 • 고동진

박충권 • 이달희 • 박수영

권영진 · 신동욱 · 이헌승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을 5급 이상인경우 58세로, 6급 이하인 경우 55세로 정하면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직급에 따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심각한 저출산과 인구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대책이 요구되므로 다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적극적인 장려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다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연령정년 및 계급정년을 연장하고,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근거를 규정함으로 써 소득 단절에 따른 양육비 부담을 해소하고 자녀 출산의 유인을 높 이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14조의2 신설 등).

#### 법률 제 호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5급 이상: 58세. 다만, 자녀가 2명인 경호공무원은 59세, 자녀가 3명인 경호공무원은 60세, 자녀가 4명 이상인 경호공무원은 61세로 한다.
- 나. 6급 이하: 55세. 다만, 자녀가 2명인 경호공무원은 56세, 자녀가 3명인 경호공무원은 57세, 자녀가 4명 이상인 경호공무원은 58세로 한다.
- 2. 계급정년. 다만,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년,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의 기간을 다음 각 목의 기간에 더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4조의2(다자녀 양육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① 처장은 5급 이하 경호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 호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다자녀 양육 경호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 등 구체적인

승진 우대 조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정년) ① 경호공무원의 정	제11조(정년) ①
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다.	
1. 연령정년	1
<u>가. 5급 이상: 58세</u>	<u>가. 5급 이상: 58세. 다만, 자</u>
<u>나. 6급 이하: 55세</u>	<u>녀가 2명인 경호공무원은</u>
	59세, 자녀가 3명인 경호공
	<u>무원은 60세, 자녀가 4명</u>
	이상인 경호공무원은 61세
	<u>로 한다.</u>
	<u>나. 6급 이하: 55세. 다만, 자</u>
	<u>녀가 2명인 경호공무원은</u>
	<u>56세, 자녀가 3명인 경호공</u>
	<u> 무원은 57세, 자녀가 4명</u>
	이상인 경호공무원은 58세
	<u>로 한다.</u>
<u>2. 계급정년</u>	<u>2. 계급정년. 다만, 2명 이상의</u>
	자녀를 둔 경호공무원의 계급
	정년은 자녀가 2명인 경우 1
	<u>년, 자녀가 3명인 경우 2년,</u>
	자녀가 4명 이상인 경우 3년
	의 기간을 다음 각 목의 기간
	<u>에 더한다.</u>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u><신 설></u>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조의2(다자녀 양육 경호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① 처장은 5급 이하 경호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경호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할 수 있다.

② 다자녀 양육 경호공무원의 기준과 승진심사 방법 등 구체 적인 승진 우대 조치는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